

장성중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예산 구분 : 본예산

예산확정일	2019-02-21	예산액	1,116,017,000
-------	------------	-----	---------------

제1조 2019학년도 장성중학교회계 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116,017,000원으로 하며 세입, 세출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2조 2019학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표 "명시이월비 명세서"와 같다.

제3조 회계연도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또는 선택적 교육수입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후에 보고한다.

제4조 ①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교원연구비, 관리 및 직책 수당, 겸직수당
2. 학교회계 직원의 인건비
3. 각종 공과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